제주시 공고 제2019-617호

##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(상속이전) 공시송달 공고

<u>자동차관리법 제12조(이전등록)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(이전등록 신청)</u>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<u>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</u>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공고명칭 :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(상속이전) 공고

2. 공고기간 : 2019.02.21. ~ 2019.03.08.(15일간)

3. 공고대상

연번	차량번호	소유자 (사망자)	주 소	비고
1	18부4643	고**	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해안마*길	
2	75너5865, 91보5347	김**	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설촌로*길	
3	69나3978	김**	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남동*길	
4	09거7706	김**	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새바*길	
5	제주7라8267, 제주80가5514	김**	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고마로*길	
6	15018080	박**	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전농로*길	
7	41서6376	신**	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무*길	
8	제주7마7867	조**	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귀덕남*길	
9	경북41누3954	최**	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사라봉*길	

## 4. 공고내용

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동의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하거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말소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상속절차를 이행하여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<u>운행정지</u>, <u>범칙금 부과</u>, <u>운행자</u>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★ 상속이전등록 기간 경과 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부과

## <구비서류>

- ▶ 이전등록신청서 ▶ 자동차 상속동의서(상속인, 상속포기인 도장날인)
- ▶ 자동차등록증▶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각 신분증사본
- ▶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▶ 책임보험가입증명서(상속인 명의)
- ★ 상속자 미 방문 시 상속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(날인), 위임장 첨부 ★
- 5. 문의처 :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이전등록 담당자(☎064-728-8409)

2019년 2월 21일

제 주 시 장